

#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06 ~ 60
----------	-----------

제출연월일	2006. 11. .
제출자	거창군수

## 1. 제정이유

- 전국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여건과 특성을 살린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 내 대학교에 발전연구소를 설치하여 관·학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 거창전문대학의 발전은 우리군의 교육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유동인구를 유입하는 큰 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상호 상생발전을 이루는 협력체계가 필요함.
- 지역 실정에 밝은 거창전문대학 교수들이 중심이 되고, 국내 유수 연구기관과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연구소를 설치하여 거창을 발전시키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현실적·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함  
(안 제1조)
- 나.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와 정책개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구소의 주요 업무를 정함(안 제4조)
- 다. 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거창군과 거창전문대학 간 공동으로 부담하고 거창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라. 연구소 운영의 기본방침, 운영규정, 예산 및 기타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함(안 제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9조
- 나.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2006.10.11~2006.10.31)결과 : 의견제출 없음

#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미래전략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지역특성과 여건이 반영된 현실적인 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언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높여 거창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소 설립) 연구소의 설립은 거창군과 경남도립 거창전문대학(이하 “거창전문대학”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설립한다.

제3조(위치) 연구소는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거창전문대학 내에 둔다.

제4조(주요업무)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발전을 위한 학술연구와 정책개발
2.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등의 주요현안에 대한 연구·조사
3. 지역발전과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관리 및 간행물 발간
4.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출연금) ①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거창군과 거창전문대학 간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원활한 연구사업을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거창군 수와 거창전문대학 학장 2인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연구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운영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운영협약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창군과 거창전문대

학의 상호 운영 협약서에 의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6년 3월 14일 거창군수와 거창전문대학장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